

의안번호	2215263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6. 1. 6.
추계번호	25B539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제1항) <u>1의2.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u>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0조(기금의 용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대응기금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현황 참고

[표 1] 광역자치단체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현황

기금 설치 여부	시·도
설치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부산
미설치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자료: 각 시·도 제출자료 취합

-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도록 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후대응기금 전입비율을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500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대응기금)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1년 8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인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 중임²⁾

2) 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표 2]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항목		2024 결산	2025 본예산 (A)	2026 안 (B)	비중	B-A	(B-A)/A
자체 수입	배출권 매각대금	187,677	348,700	765,123	26.3	416,423	119.4
	각종 정산금, 환급금	77,046	14,327	66,846	2.3	52,519	366.6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097,001	1,331,187	1,148,851	(39.5)	△182,336	△13.7
	(교통·에너지·환경세 7%)	(797,236)	(1,057,336)	(1,148,851)	39.5	(91,515)	(8.7)
	(추가전입금)	(299,765)	(273,851)	(-)	(-)	(△273,851)	순감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300,000	300,000	300,000	10.3	-	-
	전력산업기반기금전입금	200,000	200,000	200,000	6.9	-	-
	복권기금 전입금	108,333	107,593	106,893	3.7	△700	△0.7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319,910	319,910	100,000	3.4	△219,910	△68.7
보전 수입	여유자금 회수	15,863	-	217,972	7.5	217,972	순증
총계		2,305,830	2,621,717	2,905,685	100.0	283,968	10.8

주: 당초 계획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5.10.

-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및 기후대응기금 지출액 변동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현황

(각 시·도 제출자료)

(’25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시·도	지역기후대응 기금 설치 유무	기금명	설치근거 및 기금조성 재원	설치년도	기금의 존속기한	총 기금 적립 예정 규모	현재 적립금액	최근 4년간 기금에 납입한 시·도 출연금 규모				최근 4년간 총지출 규모			
								2022	2023	2024	2025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서울	설치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국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 4.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5. 한국가스공사의주식배당금 6. 온실가스배출권매각수입 7. 그밖의수입금	2007	2027.12.31.		40,490	—	—	—	—	32,580	49,392	37,021	29,663
경기	설치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경기도의 출연금 2.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판매수익 금 3. 한국가스공사출자배당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시군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2023	2028.06.30.	120,000	5,900	—	—	23,012	8,115	—	20,242	10,204	22,901
전북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 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 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024.1	2028.12.31.	10,000	3,812	—	—	—	3,644	—	434	1,156	757

시·도	지역기후대응 기금 설치 유무	기금명	설치근거 및 기금조성 재원	설치년도	기금의 존속기한	총 기금 적립 예정 규모	현재 적립금액	최근 4년간 기금에 납입한 시·도 출연금 규모				최근 4년간 총지출 규모			
								2022	2023	2024	2025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6.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7.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8.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9. 그 밖의 수입금												
전남	설치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전라남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6. 기금의운용으로생긴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2022	2026.12.31.	10,000	6,739	—	665	665	665	230	130	100	430
부산	설치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국고보조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연료화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	2025	2029.12.31.	30,000	21,700				—			10,917	11,888

시·도	지역기후대응 기금 설치 유무	기금명	설치근거 및 기금조성 재원	설치년도	기금의 존속기한	총 기금 적립 예정 규모	현재 적립금액	최근 4년간 기금에 납입한 시·도 출연금 규모				최근 4년간 총지출 규모			
								2022	2023	2024	2025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른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금 6.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과 관련된 출연금 및 기부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인천	미설치														
대구	미설치														
대전	미설치														
광주	미설치														
울산	미설치														
강원	미설치														
충북	미설치														
충남	미설치														
경북	미설치														
경남	미설치														
세종	미설치														
제주	미설치														

자료: 각 시·도 제출자료 취합